

1. 개정이유

궤도운송법 개정에 따라 궤도사업의 재허가 절차 등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검토 및 이행 확인, 안전관리책임자 직무대행 등 제도적 마련으로 안전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궤도사업 재허가 절차 등 마련(안 제4조)

나. 안전관리책임자 해임·퇴직 시 재선임 기간과 부재 시 직무대행자 지정으로 직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근거 마련(안 제20조)

다. 안전관리계획의 적절한 수립 및 이행을 위해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 조항을 마련(안 제20조의2)

라. 부상자를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장 적용의 혼선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고보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22조)

마. 행정기관에서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준공검사 의뢰 시 검사수수료 부과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궤도사업의 변경허가·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궤도사업의 변경허가·재허가·변경신고의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궤도사업 재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허가 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안전운행 및 공익기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안전관리(안전검사, 시설진단, 사고예방 등) 및 공익기여 등에 관한 실적보고서
3. 재무 건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향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투자계획서
4. 다른 법령에 따라 부지 또는 용지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재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전까지 재허가 여부를 궤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허가 여부를 통보받은 궤도사업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궤도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8조”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영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해임·퇴직신고서를 제출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안전관리책임자가 해임

· 퇴직한 경우 다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영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즉시 대행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설용은 제외한다)는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행 여부 검토 결과, 궤도시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미이행 사유에 대해 조치기한과 내용을 명시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⑥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사망자 또는 부상자”를 “사망자”로 하고, 같은 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의사의 최초 진단이 사고 발생일부터 3일이 지난 후에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진단 결과를 인지한 날을 사고 발생일로 본다) 1주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가 발생한 사고

제25조제2항 중 “대한 안전검사”를 “대한 준공검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경우를 말한다) 또는 안전검사”로, “안전검사업무를 위탁”을 “준공검사 또는 안전검사 업무를 의뢰 또는 위탁”으로, “그 위탁”을 “그 의뢰 또는 위탁”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궤도사업 재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개월		
신청인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변경 내용	현행					
	변경					
	변경일					

「궤도운송법」 제4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시 장 · 광 역 시 장
특 별 자 치 시 장 ·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 장 · 군 수 · 구 청 장

귀하

신청인 (신고인) 제출서류	1. 재허가 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안전운행 및 공익기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안전관리(안전검사, 시설진단, 사고예방 등) 및 공익기여 등에 관한 실적보고서 3. 재무 건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향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투자계획서 4. 다른 법령에 따라 부지 또는 용지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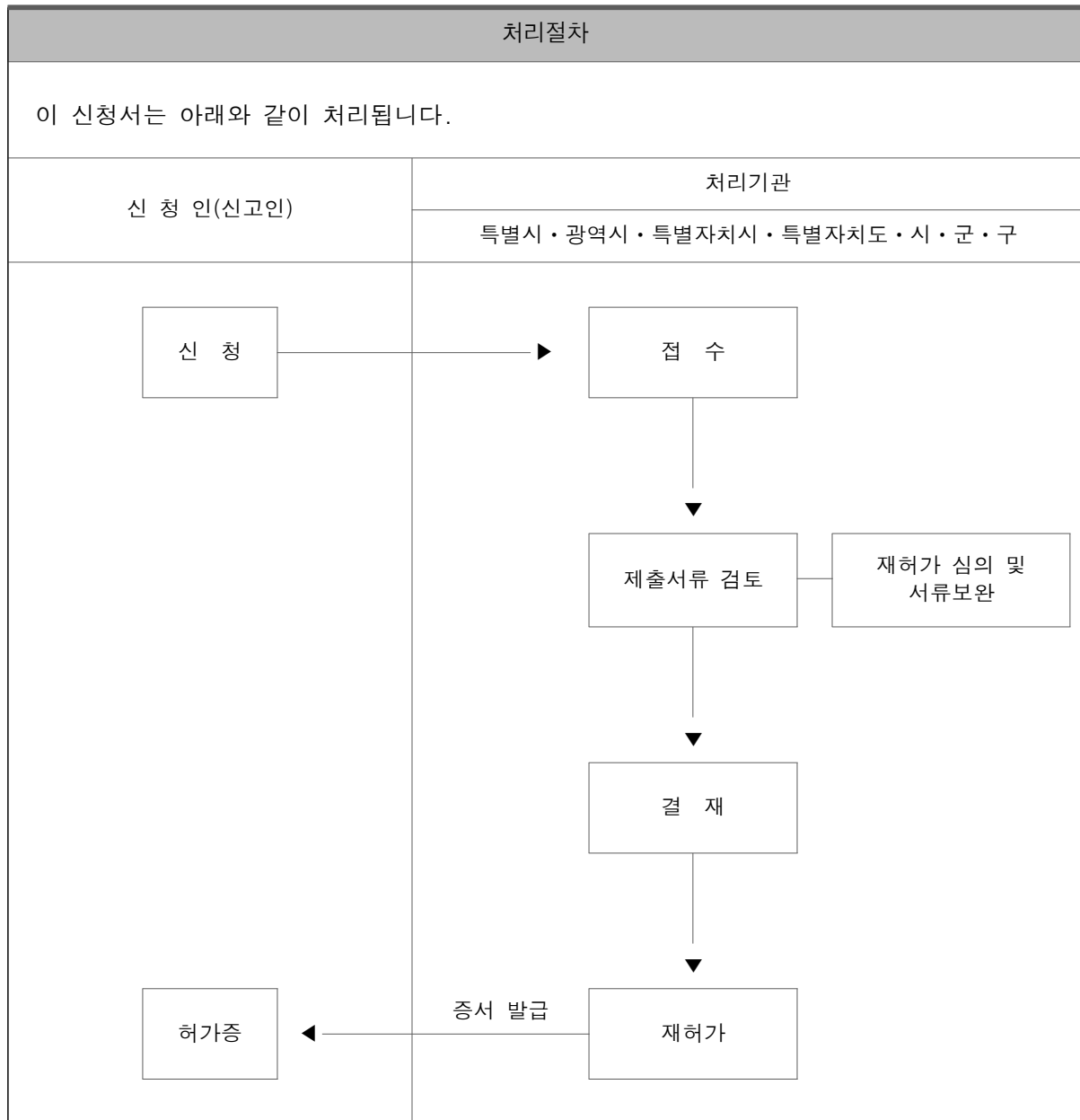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제20조의2제1항 관련)

구분	내용
1. 안전관리목표	가. 안전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나.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에 관한 사항
2. 자체 점검·정비계획	가.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 나. 점검·정비 결과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다. 주요부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부품관리계획	가. 부품관리에 관한 사항 나. 부품구매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4. 종사자 인력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가. 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나. 적정 종사자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라. 교육시행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5. 비상시 조치매뉴얼	가. 사고시 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사고분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화재, 정전, 고장 등 상황별 조치매뉴얼 및 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라. 사고보고 및 비상훈련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6. 운영매뉴얼	가. 기상 상황별 운행제한 및 행동지침에 관한 사항 나. 시설 운영 및 운행기록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보험 가입·갱신에 관한 사항 나.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변경신고의 절차 등) ① (생략)	제4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재허가·변경신고의 절차 등) ①
<신 설>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궤도사업 재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허가 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안전운행 및 공익기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2. 안전관리(안전검사, 시설진단, 사고예방 등) 및 공익기여 등에 관한 실적보고서
	3. 재무 건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향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투자계획서
	4. 다른 법령에 따라 부지 또는 용지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신 설>	③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재허

<신 설>

<신 설>

가를 받으려는 자는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2년 전
부터 1년 전까지 신청해야 하
며, 재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허가 유효기간 만료
일부터 6개월 전까지 재허가 여
부를 궤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허가 여부를
통보받은 궤도사업자가 그 결과
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
별시장·광역시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
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궤도사업자에게 지체 없
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
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② (생 략) 제9조(준공검사 신청절차 등) ① · ② (생 략) ③ 영 제4조제2항제5호의 안전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 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체 점검·정비계획 2. 부품관리계획 3. 운전 및 점검·정비 등 안전 관련 분야 종사자의 인력운영 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화재·정전·고장 등으로 인 한 비상시 조치 매뉴얼 5.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 요한 사항 ④ (생 략) 제20조(안전관리책임자) <u>영 제18</u> <u>조에 따라</u> 안전관리책임자를 선 임·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서 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수 있다. ⑥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준공검사 신청절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0조(안전관리책임자) ① <u>제도</u> <u>사업자 또는 전용제도운영자는</u> <u>영 제18조</u>----- ----- ----- ----- ----- -----
---	--

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해임·퇴직신고서를 제출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해임·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안전관리책임자가 해임·퇴직한 경우 다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기 전까지 영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즉시 대행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신 설>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설용은 제외한다)는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영 제13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시행 여

<신 설> 제22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① (생략) 1. <u>사망자 또는 부상자가</u> 발생한 사고 <신 설> 2. 3. (생략)	부 검토 결과, 궤도시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미이행 사유에 대해 조치기한과 내용을 명시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⑥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① (현행과 같음) 1. <u>사망자</u>----- 2.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의사의 최초 진단이 사고 발생일부터 3일이 지난 후에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진단 결과를 인지한 날을 사고 발생일로 본다) 1주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가 발생한 사고 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	---

② ~ ⑥ (생 략) 제25조(수수료) ① (생 략) ② <u>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u> 신청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 정한 대가의 기준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시장 · 군수 · 구청 장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이 <u>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u> 경우에 는 <u>그 위탁을</u> 받은 자를 말한 다)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 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u>대한 준공검사(법</u> <u>제8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경우</u> <u>를 말한다) 또는 안전검사</u>----- ----- ----- ----- ----- <u>준공검사 또는 안전검사 업무를</u> <u>의뢰 또는 위탁</u> ----- ----- <u>그 의뢰 또는 위탁</u>----- -----.
---	---